



COVID-19 산업 지침: 생명 과학

2020년 7월 29일

covid19.ca.gov



개요

2020년 3월 19일, 주 공중보건 관리자 및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 책임자는 주민 사이의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의 자택대기명령을 공표하였다.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은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보고된 질환의 정도는 아주 가벼운 질환으로부터 (일부는 증상을 보이지 않음) 사망을 초래하는 심각한 질환까지 이른다. 65세 또는 이상의 심장질환, 폐 질환, 또는 당뇨 등의 심각한 기저질환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 특정 집단은 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의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전염은 대개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에 감염자와 사람들이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경우 이루어지며, 심지어는 그 감염자가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아직 증상이 발달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루어진다.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근로자를 포함한 산업 집단별 또는 작업 집단별 COVID-19 개체수 또는 비율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의 업무현장 범위 내 발생은 근로자들이 COVID-19에 감염되거나 전파를 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업무현장의 예로는 병원, 장기 요양시설, 교도소, 식품 생산처, 창고, 육류가공처리공장, 그리고 식료품 매장들이 해당한다.

자택대기명령이 수정됨에 따라, 근로자 및 공공의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절차들을 밟는것이 필수적이다.

중요 예방 실천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 가능한 한 최대의 신체적 거리두기,
- ✓ 근로자 및 고객들/의뢰인들의 안전 가리개 (호흡기 보호가 필요로 하지 않는 곳) 사용,
- ✓ 빈번한 손세척과 주기적 청소 및 소독,
- ✓ 본 절차들 및 다른 COVID-19 예방계획 요소들에 대한 근로자 교육.

덧붙여, 새로운 사례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그리고 만약 식별되었을 경우,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기 위한 신속한 개입 및 공중보건 책임자들과의 협업을 위한 장소에 적절한 절차들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목적

본 문서는 근로자들과 고객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명과학 산업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법령, 규제령, 또는 총괄적으로 협의된 어떠한 노동권에 대한 폐지 또는 취소를 뜻하기 위함이 아니며, 자치구의 보건령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며, 또한 기존의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Cal/OSHA¹의 규제적 요구사항들을 대신하지 않는다. COVID-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공중 보건 지침과 주/지역 명령들에 대한 변경사항에 주시하라. Cal/OSHA는 병원균을 다루는 시설들을 위한 특별한 요구사항들 (title 8 [section 5199](#)) 과 추가 안전 및 건강 지침을 Cal/OSHA COVID-19 감염 예방 [웹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다. 중앙질병관리본부(CDC)는 [실험실](#) 및 [사업체와 고용주들](#) 을 위한 그들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안면가리개 사용 요구

6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는 높은 노출위험이 존재하는 모든 공공장소 및 업무현장의 개개인과 근로자들 양쪽 모두의 안면가리개의 사용을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안면가리개 사용에 관한 지침](#) 을 공표하였다.

캘리포니아주 내의 사람들은 아래의 나열된 상황의 경우, 근로현장 또는 근로현장 이외의 곳에서 업무 시 반드시 안면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 모든 일반 대중과의 직접적 소통;
- 당시의 일반 대중의 존재 여부를 막론하고 그들이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의 근무 ;
- 다른 이에게 판매 또는 납품용 식료품이 가공되거나 포장되는 곳에서의 근무 ;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리고 주차시설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근무 또는 도보 통행하는 경우 ;
- 신체적인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이들 (근무자의 식구 또는 동거인들을 제외함)이 존재하는 어떠한 방 또는 폐쇄된 공간 ;
-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각종 대중교통, 또는 준공공교통기관, 택시, 또는 개인 자동차 서비스, 또는 합승차량의 운전 또는 가동. 승객이 없는 경우, 안면가리개가 강력히 권유됨.

이러한 규칙들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과 예외들을 포함한 완벽한 세부사항은 [지침](#)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안면가리개가 다른 환경에서도 강력히 권장되며, 고용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안면가리개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합당한 안면 가리개 구매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들은 안면가리개 착용으로부터 면제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수용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근로자가 일반적인 경우 다른사람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하여 안면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요구되지만 의료상의 문제로 인하여 안면가리개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들은 실행 가능하고 의료상태로 인하여 제한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아랫부분이 천으로 덧대어진 안면가리개 등의 비제한적 대체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사업체들은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안면가리개 지침](#) 의 안면가리개 착용에 대한 예외조건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지침](#) 에 해당하는 모든이들에 한하여 해당자들을 안면가리개 착용으로부터 제외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업체들은 고객들, 의뢰인들, 방문객들, 그리고 근로자들 내의 이러한 예외사항들을 다룰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감염성 병원균 처리 근무지

연구시설, 실험실, 그리고 병원균을 포함할 수 있는 물질들을 다루고 그 운영이 병원균을 공기중에 퍼트리지 않는 기타 장소들은 반드시 해당 시설의 생물학적 안전성 책임자의 집행을 통해서 효과적인 생물학적 안전성 계획을 서면으로 성립, 도입, 그리고 유지해야 한다. 생물학적 안전성 계획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감염성 병원균에 노출되는 직업분류의 목록
- 실험실 물질에 알려진 또는 합당히 존재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감염성 병원균의 목록과 해당되는 생물학적 안전성 방안들.
- 모든 들어오는 병원균을 포함한 물질들이 불활성적 또는 약화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맹독물질로 취급됨을 확실히 하는 절차들.
- 중앙질병관리본부(CDC)의 [미생물학적 및 생물 의학적 실험실 내 생물학적 안전성 지침](#)에 따르는 생물학적 안전성 책임자에 의해 시행되는 위험 측정.
- 격납 장비와 절차를 포함한 실현 가능한 공학적 제어.
- 중앙질병관리본부[CDC]의 지침과 위험 평가에 따른 필수 안전 근무 관행 제어와 금지된 비안전 근무 관행.
- 호흡기 보호장비를 포함한 필수적인 개인보호장비 (PPE)
- 실험실 표면, 장비, 도구들을 위한 효과적인 오염제거와 소독의 절차.
- 근로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과 요구되는 근로자 교육의 제공을 위한 절차.
- 해당 시설 내의 비통제된 방출 및 시설 외의 비처리된 방출을 위한 응급 절차.
- 해당되는 예방접종을 근로자들에게 제공.
- 실험실 병원균에 노출된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 및 의학적 검진을 제공하는 절차.
- 시설의 생물학적 안전성 절차에 대한 시설 연중사찰 및 연중감사 절차.
- 사찰 및 감사중 발견된 결함의 기록과 보안을 위한 절차.



근무지 상의 구체적 계획

- 서면의 업무현장에 특화된 COVID-19 예방책을 모든 시설에 성립시키고, 모든 업무구역과 작업과제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진단을 시행하며, 각 시설마다 예방책을 이행시키기 위하여 전담자를 세울 것.
-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안면가리개 지침](#) 을 업무현장 고유의 예방책에 포함시키며, 예외사항을 다루기 위한 정책도 포함시킬 것.
- 근로자들 내 COVID-19 확산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한 해당지역 보건부서의 연락 정보를 파악할 것.
- 예방책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근로자들의 대변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과 소통을 하며 예방책이 근로자 및 근로자들의 대변인에게 열람 가능하도록 할 것.
- 업무현장이 예방책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기록하며 확인된 미달사항을 개선할 것.
- COVID-19 질병을 조사하고 감염의 위험에 업무관련 요소가 원인제공을 하지는 않았나 판단할 것. 차후의 사례 예방을 위하여 예방책을 개선시킬 것.
- 업무현장에 확산이 발생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지침](#) 에 따라 필요한 절차들과 의례들을 이행할 것.
- 감염된 근로자와의 밀접한 접촉 (6피트 이내에서 15분 이상)을 한 사람을 밝혀내고 COVID-19 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근로자(들), 그리고 그(들) 와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절차를 밟을 것.
- 아래의 지침들을 준수할 것. 실패 시 일시적 가동정지 또는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환경 내 질병들을 야기 가능함.



근무자 교육에 대한 주제

-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생물학적 안전성 계획과 병원균을 다루는 근무중 연무제로 전파되는 질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활용되는 모든 통제방법들에 대한 교육.
- 어떻게 [COVID-19](#) 확산을 방지하며,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기저질환 상태가 이 바이러스에 더욱 쉽게 감염되게 하는가에 관한 정보들.
- [중앙질병관리본부 지침](#) 을 사용한 체온 및/또는 증상확인을 포함한 자택 자가진단법.
- 출근 삼가의 중요성:

- 열,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피로, 근육통 혹은 몸살, 두통, 새로운 미각 또는 후각상실, 인후통,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구토, 또는 설사 등 [중앙질병관리본부의 서술](#) 과 같은 COVID-19의 증상들을 보이는 근로자의 경우, 또는,
- COVID-19 확진판정을 받았고 아직 격리해제 상태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또는,
- 최근 14일 이내, COVID-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잠정적으로 전염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예를 들어, 아직 격리상태임)와 접촉한 근로자의 경우.
- 확진판정 이후 근무복귀를 위해서 해당 근로자는 첫 증상 이후 10일이 경과되었고, 증상들이 개선되었고, 그 해당 근로자가 최근 72시간동안 고열을 보이지 않았어야 한다 (해열제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들을 보이지 않는 COVID-19 확진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첫 COVID-19 검사 양성판정일로부터 10일이 지난 경우에만 근무복귀를 할 수 있다.
- 끊임없는 흉부통증 또는 압박감, 혼동, 새파란 입술 또는 얼굴 등을 포함한 증상들이 심각해질 경우 의료조치를 받기 위하여. [중앙질병관리본부의 웹페이지](#) 에서 최근사항들과 더욱 자세한 사항들을 열람할 수 있다.
- 비누를 사용하여 20초간 문지르기 (또는, [중앙질병관리본부 지침](#) 에 따라, 근로자가 세면대 또는 손세척소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 최소 60% 이상의 에탄올 (선호됨) 또는 70% 이상의 아이소프로판올 (비감시 하의 아동들에게 해당 제품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 를 포함한 비누와 물을 이용한 잦은 손씻기의 중요성.
- 근무 시 및 비근무 시의 신체적 거리두기의 중요성. (다음 신체적 거리두기 항목을 참조할 것)
-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안면가리개의 정확한 사용
 - 안면가리개는 착용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이는 개인용 보호적 도구(PPE)가 아님.
 - 안면가리개는 착용자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신체적 거리두기와 잦은 손세척의 필요성을 대신하지 않음.
 - 안면가리개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야 함.
 - 근로자들은 안면가리개 착용 전후 또는 안면가리개를 바로잡기 전후에 반드시 손세척 또는 손세정을 해야 함.
 -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삼가할 것.
 - 안면 가리개는 공유되어서는 안되며 매 근무교대마다 세척 또는

폐기되어야만 함.

-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안전가리개 지침](#)에 포함된 안전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거나 면제하는 상황들을 지시하는 정보, 또한 안전 가리개 사용을 확실시 하기 위한 모든 정책들, 근무 규칙들, 그리고 고용주가 채택한 실천들. 또한 교육은 안전가리개 면제대상인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모든 하청업자, 임시 또는 계약직원들 또한 COVID-19 예방정책과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휴대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받도록 확실시 할 것. 임시직 및/또는 계약직원들을 보급하는 기관들과 상기된 책임들에 대하여 미리 상의할 것.
- 유급 휴가 혜택에 대한 정보는 이를 받을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재정적으로 자택 체류가 용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COVID-19로 인한 병가 및 산재 보상금 지원 정부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본 프로그램에는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에 따른 직원의 병가 권리를 비롯하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 명령 N-62-20에 의거, 본 명령이 유효한 시기 동안 산재 보상 혜택](#) 및 COVID-19와 업무간 관련성에 대한 직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 통제 방안 및 스크리닝[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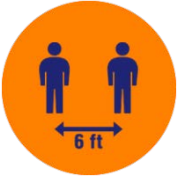
- 체온 및/또는 증상 검사를 모든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근무시작 시 제공하며, 해당 기관에 출입하는 모든 협력업체들, 계약직들, 또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제공할 것. 체온/증상 검사자가 가능한 한 근로자들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것.
- 해당 기관에서 제공되는 것의 적절한 대체방안인 자택 자가검사를 요구할 경우, 그 검사가 해당 근로자가 근무를 위해 자택에서 떠나기 직전에 행해진 것이고 위의 직원교육을 위한 주제들 항목에 설명된 바와 같이 [중앙질병관리본부 지침](#)을 따른 것임을 확실시 할 것.
- COVID-19 증상을 보이거나 아픈 근로자들과 고객들이 집에 머무르도록 장려할 것.
- 고용주들은 안구 보호와 장갑을 포함한 모든 요구되는 보호장비들을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이를 제공하며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확실시 할 것.
- 고용주들은 잦은 손세척 또는 손세정제 사용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일회용 장갑의 사용을 고려해야 함; 예시로는 다른 이들의 증상을 검사하거나 공동으로 만져지는 항목들을 다루는 근로자들을 위함.
- 모든 실험실, 연구, 또는 임상적 설정의 시설들은 기존의 개인보호 장비 관행을 점검하고 COVID-19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방안 또는 필수 조정을 판단해야 함.



세척 및 소독 규정

- 휴식실과 점심식사실, 탈의소, 층계, 계단통, 난간, 그리고 엘리베이터 통제 등 출입장소 등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들에 청소를 철저히 실시할 것. 실험기구, 도구, 사무실 자재, 문고리, 변기, 그리고 손세척 시설을 포함하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표면을 자주 소독할 것.
- 작업대 표면, 도구, 손잡이, 그리고 자물쇠 등, 또한 고정식 및 이동식 장비를 포함하지만 이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만져질 수 있는 표면들을 근무교대 사이 또는 사용자들 사이 중 더욱 빈번한 쪽에 해당하는 경우를 택하여 닦아야 함.
- 전화, 책상, 사무실 기기 또는 어느 곳이든 기타 항목들을 공유하는 것을 피할 것. 개인보호기구[PPE]는 절대 공용하지 말 것.
- 근로자들이 개인의 작업공간을 닦고 소독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세정제품을 보급해야 함. 위생시설들이 가동상태에 있으며 물품이 항상 비축되어 있음을 확실시 하고 필요 시 추가로 비누, 페이퍼타월, 그리고 손세정제가 제공되도록 할 것.
- [재향군인병](#) 과 다른 물에 관련된 질병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수도설비와 장치들이 오랜 기간동안의 시설 폐쇄 이후 사용이 안전한지를 확실시 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
-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업무시간 중 청소 시행들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 청소 과제는 업무시간 중 근로자의 책무들 중의 일부로 배정되어야 함. 주기적인 근무처, 실험실, 그리고 기타 시설공간의 대청소를 확실시 하기 위하여 시간들을 조정할 것. 실현 가능한 경우, 신체적 거리두기와 휴식실 청소를 자주 행하는 것을 확실시 하기 위하여 휴식에 시차를 둘 것.
- 소독용 화학물질 선택시, 고용주들은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 보호국 \(EPA\) 허가](#) 목록에 있는 COVID-19과 반대로 사용 허가된 제품들을 사용하도록 하며 제품의 사용설명을 따르도록 할 것. 최근에 만들어진 바이러스성 병원체에 맞서 효과적인 것으로 분류된 소독제,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 (1갤런[약3.79 미터]의 물에 5 테이블스푼[약74 밀리리터] 비율), 또는 표면에 적합한 최저 70% 이상의 알코올 용액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의 위험성, 제조업체의 사용설명, 환기 지시사항, 그리고 Cal/OSHA의 안전한 사용 지시사항에 대해 직원교육을 제공할 것. 세정제 또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제품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요구되는 장갑 및 기타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에 따라 요구되는 [천식-더욱 안전한 청소방법들](#) 을 따르며 적절한 환기를 확실시 할 것.
- 시설내 카페테리아 또는 구내식당의 제공품들을 미리 포장된 음식, 음료, 조미료, 그리고 식기류 분배를 포함한 방법을 활용하여 조정할 것.
- 가능하면, 바닥청소 시 쓸거나 병균을 공기중으로 퍼트릴 수 있는 기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지 말 것. HEPA 필터를 사용한 진공청소기를 가능한 한 사용할 것.

- 이동식 고효율 공기청정기의 설치, 건물의 공기 여과장치를 가능한 한 최대 효율로 개선, 그리고 작업장, 객실, 그리고 다른 공간들의 외부공기와 환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타 변경사항의 적용을 고려할 것.
- 모든 실험실, 연구, 또는 임상적 설정의 시설들에 대해 기존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점검하고 COVID-19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방안 또는 필수적 조정을 판단해야 함.



신체적 거리두기 지침

- 최소 6피트의 신체적 거리두기를 근로자들 사이에서 행하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것. 실물의 칸막이 또는 시각적 안내표지 (예, 근로자들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바닥 표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업무공간이 근로자들 간에 최소 6피트의 거리두기가 가능한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업무공간, 큐비클[좁은 공간], 실험실들, 그리고 기타 공간들을 다시 디자인할 것. 근로자들 사이의 신체적 거리두기에 있어 최소한 6피트 유지를 위하여 연회장과 회의실의 수용 가능 인원수를 줄일 것. 별도의 출입구를 지정하고 이의 영향을 알리는 표지를 게시할 것.
- 실현 가능한 경우, 한번에 근무처에 존재하는 근로자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근무 관행을 활용할 것. 이는 일정관리 (예, 근로자별 업무 시작/종료의 시간차), 현장보고 일시의 교대 성립, 또는 실현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의 사용이 일어나는 것을 포함한다. 근로자들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물함을 재배정하거나 사물함 사용을 제한/사물함의 사용을 드문드문 떨어지게 함.
- 업무변경 신청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고객 및 다른 근로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라. (예, 물품 목록 관리업, 또는 행정적 요구사항을 재택근무를 통하여 관리하는 업무)
- 일체의 회의와 인터뷰를 전화나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꿈. 직접 대면이 요구되는 회의에는 신체적 거리두기 지침을 꼭 준수하도록 회의를 조정하고 더 작은 규모의 회의를 이용함.
- 신체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힘든 곳에서는 직원들은 체온, 육안 및 구두 점검을 포함한 증상 증가 검사를 받아야만 함.
- 비필수적 출장을 중지하고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원격회의를 장려함.
- 근로자들이 신체적 거리두기를 어기는 악수 또는 비슷한 인사방법을 피하도록 요구할것.
- 바이러스 전염의 제한을 위해 최소한 6피트의 격리를 확실히 하도록 폐쇄된 공간 내의 직원 수에 추가 제한을 둘 것.
- 신체적 거리두기 규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 및 근무시간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휴식시간에 시차를 둘 것.

- 휴식 중 근로자들을 격리시키고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휴게실을 폐쇄하거나, 또는 칸막이를 사용하거나, 테이블/의자의 거리를 넓힐 것. 가능하다면, 그늘막과 신체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는 좌석을 구비한 옥외 휴식공간을 만들 것.
- 연구, 제조, 그리고 다른 업무공간, 특히 신체적 거리두기의 유지가 어려운 곳에서 COVID-19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체계를 이용함 : 공학적 제어, 행정적 제어, 그리고 개인보호장비 (PPE).
 - 공학적 제어에는 플렉시글라스(Plexiglas) 또는 다른 견고하고 불침투성 칸막이 등의 물리적 또는 공간적 장벽을 근로자들 사이에 설치함이 포함된다.
 - 행정적 제어에는 근무조의 인원수를 증가시켜 한번에 출근하는 근로자수를 줄이고 충분한 신체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된다.
 - 개인보호장비 (PPE)는 안면가리개, [특정 종류의 마스크](#), 그리고 불침투성의 장갑을 포함한다. 호흡기 같은 몇몇 일회용 장비들은 의료업 종사자들과 병원균을 다루는 근로자들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그 이외의 근로자들은 사용해서는 안됨을 참고할 것.

1취약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추가적인 준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무용 업무 공간은 반드시 모든 [Cal/OSHA](#)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표준의 지침을 비롯하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CDPH\)](#)의 지침을 준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의 변경 사항에 따라 운영 방침을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